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김기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41
----------	-------

발의연월일 : 2025. 11. 18.

발 의 자 : 김기웅·김석기·백종현
김 건·이만희·권영세
김형동·임종득·이성권
김재섭·서명옥·박성훈
의원(12인)

제안이유

지금까지 북한자료는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에 중점을 두고 국가정보원의 지침인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특수자료로 분류되는 일부 자료에 한정하여 폐쇄적으로 관리되어 왔음.

그런데 최근 학술·언론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북한에 대한 이해도 제고 목적으로 북한자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법률이 아닌 지침으로 폐쇄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자료의 수집·관리·이용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북한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북한자료의 수집·관리·이용 전반에 대해서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북한자료의 관리·활용 체계를 확립하고,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및 북한 연구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한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의 실상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이해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북한자료를 국외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북한자료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하려는 자에게는 그 지급액, 지급 대상,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의무를 부과함(안 제4조).
- 다.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 라. 북한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관리·이용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북한자료의 분류, 공개, 취급·관리·보안에 관한 기준을 각각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 마. 취급기관의 장은 통일부장관이 수립한 분류 기준에 따라 북한자료를 특수자료와 일반자료로 분류하고, 그 목록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
- 바. 취급기관의 장은 고유업무 및 학술조사 등의 수행 등 특수자료 취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

아 특수자료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특수자료를 공개하려는 자에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의무를 부과함
(안 제10조).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한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의 실상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이해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자료”란 북한이 단독 또는 외국인(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 정부를 말한다)과 함께 제작·발행한 문서, 도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자료(복제·복사하거나 발췌·인용 등을 통하여 재연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특수자료”란 북한자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7조에 따라 분류된 자료를 말한다.
 - 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나. 북한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폭력·과괴 활동을 찬

양·고무·선전하는 내용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다. 가목 또는 나목의 자료를 복한 내외에서 복제·복사하거나 발

췌·인용 등을 통하여 재연한 자료

3. “일반자료”란 특수자료를 제외한 북한자료를 말한다.

4. “취급기관”이란 북한자료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5. “감독기관”이란 취급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관리 및 이용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북한자료의 반출·반입

제4조(반출·반입의 승인 등) ① 북한자료를 국외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해당 북한자료의 거래 내용 및 대금·저작권료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북한자료의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하려면 제5조에 따른 북한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북한자료의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경우

2.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④ 북한자료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하려는 자는 지급액, 지급 대상,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반출·반입의 승인 및 저작권료의 지급·관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제5조(북한자료심의위원회) ①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자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1항에 따른 북한자료의 반출·반입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3항에 따른 분류 요청에 대한 판단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특수자료의 공개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1급 상당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 북한 및 통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준 수립 등)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관리·이용하기 위하여 북한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1. 분류 기준

2. 공개 기준

3. 취급·관리·보안 기준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기준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7조(북한자료의 분류) ① 취급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류 기준에 따라 북한자료를 일반자료와 특수자료로 분류하고, 그 목록을 감독기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자료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북한자료의 분류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때에는 소관 감독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를 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북한자료를 분류하고, 그 결과를 취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목록이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급기관의 장에게 자료 재분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목록을 일반자료와 특수자료로 분류 또는 재분류하여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⑥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제출받은 목록과 제5항에 따

른 고시에 대한 의견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북한자료의 분류 및 재분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특수자료 취급기관의 인가 등) ① 특수자료를 취급하려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은 감독기관의 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취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 외에는 특수자료를 취급할 수 없다.

1. 해당 기관의 고유업무 수행

2. 학술조사 및 연구 수행

3. 다른 취급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대행 및 제공

4. 그 밖에 특수자료 취급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특수자료의 취급 목적, 분류의 적정성 및 보안대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가하여야 한다.

④ 감독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특수자료 취급을 인가한 때에는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특수자료의 인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특수자료 취급기관 인가 해제) ① 감독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

라 인가를 받은 취급기관의 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인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인가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제8조제2항의 목적이 상실되거나 중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
 2.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중대한 보안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여 인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3. 제8조에 따라 인가를 받고 1년 이내에 특수자료 취급 실적이 없는 경우
- ② 소관 감독기관의 장은 취급기관이 보유한 특수자료의 처리결과를 확인한 후 인가를 해제하여야 하며, 인가 해제 사실을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취급기관 인가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북한자료의 공개

제10조(특수자료의 공개 신고 등) ① 특수자료를 공개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수자료의 공개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회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특수자료를 공개하려는 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자료의 공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11조(국립평화통일자료원 설치 등) ① 북한자료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통일부에 국립평화통일자료원(이하 “자료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료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북한자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취급기관 등의 연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자료를 이용한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북한자료 연구·조사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자료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북한자료의 연구·조사·연계 지원) 국가는 대학, 민간단체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북한자료에 대한 연구·조사 및 연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① 통일부장관 및 감독기관의 장은 각 소관 취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 및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소관 취급기관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취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시정명령)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자료의 수거, 공개 중지, 이용 중지, 파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 자료를 국외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한 경우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특수자료를 공개한 경우

3. 북한자료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통일부장관 및 감독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 및 감독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의 의무) 북한자료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 자료를 국외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한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수자료를 취급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특수자료를 공개한 자
4. 제16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과태료) ①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북한자료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북한자료 재분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출·반입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북한자료를 국외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자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특수자료로 분류된 자료는 이 법에 따른 특수자료로 본다. 다만, 취급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특수자료를 제7조에 따라 다시 분류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자료 취급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받은 특수자료 취급 인가는 이 법에 따른 특수자료 취급

인가로 본다. 다만, 인가를 받은 취급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8조에 따라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한다.